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가단5225876 판결 [가맹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상훈, 신가영, 김영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동환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변 론 종 결 2020. 7. 14.

판 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12,1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2019.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C은 2019. 2. 21. 추후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사 김유미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2018. 5.경 피고들과 'D'노래방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금 9,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위 금원 및 기타 제반 손해를 입은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합니다)는 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2016. 8. 4. 설립된 법인으로(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2018. 5.경 원고들과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로부터 합계금 9,000만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가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며,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운영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 여러 가지 상당한 편의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가맹계약을 체결하게끔 한 후 공사가 지체되자 원고들에게 공사 지체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약속한 자입니다.

2. 사실 관계

- 가맹계약의 체결에서부터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 (1) 원고 A은 2018. 3.경 지인을 통해 코인노래방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피고회사의 영업팀장인 소외 E을 소개받고, 위 팀장으로부터 코인노래방 가맹과 관련한 총괄적인 사업 설명을 들은 후, 직장동료인 원고 F과 함께 위 프랜차이즈사

업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피고회사에 본격적인 문의를 하게 됨에 따라 2018. 4. 초경 자신을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소개하는 피고 C(‘코인노래방’의 상표권자로서 피고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고들이 ‘사업을 해 보고는 싶으나 전체적인 계약 금액이 너무 고액이라 고민중이다’라고 하자, 피고 C은 ‘계약 체결 전에 계약금 명목으로 10% 상당의 금원을 선 지급하면, 잔금 중 4,500만원 상당을 매장 오픈 후 분할로 납부하게끔 해 주겠다. 그리고 매장 오픈시 이종격투기 선수인 G의 팬사인회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 (2) 위와 같은 피고 C의 구체적인 제안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심한 원고들은 위 제안에 따라 선계약금 명목으로 2018. 4. 18.과 같은 달 20. 그리고 30.에 각 500만원씩, 합계 1,500만원을 원고 F의 계좌를 통해 피고회사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에 각 지급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거래내역서’ 참조).

- (3) 이후 원고들은 2018. 5. 4. 피고회사를 대리한 위 E 팀장과 함께 인천시 I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회사를 “갑”으로 하고, 원고 A을 “을”로 하는 아래 내용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함께 피고회사로 하여금 인테리어 설비공사와 노래방시설에 필요한 제반 설비 등의 구입을 요청하는 각 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갑 제3호증의 1 ‘계약서’ 및 갑 제3호증의 2 ‘가맹계약서’ 참조).

* 계약서

- 해당 주소지 : 인천 중구 J상가 2층
- 전체 계약 금원 : 139,513,000원

계약금 명목 36,853,900원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도금 명목 38,146,100원 (목공사 자재 입고 전)

잔금 명목 4,513,000원¹⁾ (노래방 반주기기 납품 예정일 10일전)

- 공사 착공일 : 2018. 5. 10.

- 공사 완료일 : 2018. 6. 27.

- 특약사항 :

1) 룸 당 500만원으로 책정된 전체 창업비용에는 실내인테리어공사, 각방 반주기세트, 지폐교환기, 카운터, 4채널CCTV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2) G 선수 팬사인회 지원

* 가맹계약서

- 가맹점 사업자 상호 : D 운서동 점

- 계약기간 : 2018. 5. 4.부터 2020. 5. 3.까지 (이상, 제3조 ①항)

- “을”이 “갑”에게 가맹점의 설비를 의뢰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별첨A의 인테리어 설비 의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②항)

- “을”은 “갑”에게 요구품목에 해당하는 기타 설비 등의 구입 및 설치를 의뢰하여야 하며, 권유품목에 대해서는 “갑”이 제시한 기타설비 등의 기준과 사양에 맞추어 직접 구입하거나 별첨B에 따라 “갑”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②항)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 ①항)

1) 나머지 잔금 4,500만원은 피고 C의 당초 약속대로 노래방이 오픈한 후 매월 매출에 비례하여 분할로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갑” 또는 “을”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39조 ③항)

(4)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후 원고들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2018. 5. 4. 계약금 명목으로 36,853,900원을, 그리고 같은 달 29. 중도금 명목으로 38,146,100원을 원고 신명선의 계좌를 통해 피고회사의 위 H은행 계좌에 각 지급함으로써(갑 제2호증 ‘거래내역서’ 참조), 앞서 선계약금 명목으로 기지급한 1,500만원을 포함하여 함께 금 9,000만원을 피고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5)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코인노래방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2018. 6. 4. 인천시 중구 J 소재 건물 중 2층 전체를 원고 A의 명의로 임대 보증금 2,000만원, 임료 175만원(부가세별도), 임대기간 2018. 6. 4.부터 2020. 6. 3.까지 2년으로 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²⁾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부동산 월세계약서’ 참조).

* 당초 이 사건 가맹계약서 상에는 착공일이 2018. 5. 10.로 되어 있으나, 노래방이 들어설 위 건물이 신축과정에서 인·허가가 지체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8. 6. 4. 착공, 2018. 7. 중순경 완공, 2018. 7. 25. 노래방 오픈’ 하는 것으로 일정을 합의하였습니다.

(6) 이 사건 가맹계약 후 피고회사는 2018. 6. 2.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공사가 지체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2018. 6. 28.경에 되어서야 비로소 각각의 방을 구획하는 벽체공사(칸막

²⁾ 계약일은 2018. 6. 4.이나 2018. 5.말경부터 위 건물에 대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코인노래방 설치 공사는 크게 기초공사(바닥, 천장), 칸막이, 방음, 전기, 냉·난방시설, 소방, 음향(노래방기기 및 마이크), 기타 집기용품(소파 등) 순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수차에 걸쳐 공사 진행에 대한 독촉을 하였지만, 피고 C은 무더운 날씨, 인부들 휴가, 냉난방기 업체 선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여전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었고, 심지어 원고들의 연락마저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갑 제5호증의 1내지 4 ‘각 카톡 문자’ 참조).

(7) 이런 사정 속에 원고들이 피고 C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도 고려하겠다’고 하자, 2018. 7. 27. 피고 C은 ‘7. 25. 이후부터 발생하는 원고들의 임대료와 대출이자에 대해 일체 보상하고, 7. 25.부터 일 매출에 대한 금액 보상은 추후 협의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 최고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갑 제6호증의 1, 2 ‘계약이행 최고서3’ 참조).

이와 함께 피고 C은 늦어도 9월 안으로 노래방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사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1일 8만원 및 공사 지연 보상금 1일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이와 같은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카톡 문자’ 참조).

(8)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약속과는 달리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들의 독촉 속에

3) 피고 C은 자필로 계약이행 최고서(갑 제6호증의 1)를 작성한 후, 위 최고서를 인증하기 위해 위 최고서 위에 자신의 신분증을 올려놓고 이를 촬영한 뒤, 위 영상(갑 제6호증의 2)을 원고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2018. 9. 5.경에서야 전기공사가 재개되었지만 이 또한 진행이 순조롭지 못해 결국 피고들은 9월내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앞선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8. 10. 17.경 한국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나(갑 제7호증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참조), 이마저도 피고들의 무 대응으로 조정절차가 아무런 성과없이 종결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 과정에서 자신들과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가맹점주들이 상당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8호증의 1내지 6 ‘각 피해사실 확인서’ 참조).

이에 원고 A은 2018. 11.경 피고들을 사기 및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9) 원고들이 형사고소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피고들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던 공사를 재개하였는데, 그 이후로 천장 및 바닥 타일 공사, 각 방의 출입문 부착, 각 방의 벽지·환풍구 설치, 전기배선, 노래방기기 거치대 설치 등 전체공사 공정률의 약 50% 상단에 해당하는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0) 그러던 2019. 5. 13. 원고들의 형사고소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원고 A과 피고 C은 ‘피고 C이 2019. 5. 31.까지 공사 완료 및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체보상금 및 일부 월세 등 합계 3,500만원을 지불한다. 원고 A은 위 합의금을 받으면 피고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추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위 합의사

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합의 및 고소취소장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갑 제9호증의 1 '합의 및 고소취소장' 참조), 위 합의에 따라 원고 A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위 형사사건은 기소증지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갑 제9호증의 2 '불기소이유통지서' 참조).

- (11) 위 형사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됨에 따라 원고들은 2019. 5.말경까지 공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렸지만, 이후의 공사 진행은 각 노래방마다 어지럽게 널려져 있던 각 전기선을 정리하는 정도의 작업만 이루어졌을 뿐이었고, 결국 형사조정 당시 약속한 2019. 5.경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내용들이 모두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수차 공사 진행을 독촉해 보았지만, 피고 C은 연락마저 단절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9. 7. 12. 원고들은 '2019. 7. 20.까지 공사가 완료되기를 독촉함과 동시에 만약 그때까지 불이행될 경우 그에 따른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제 및 제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마저도 수령을 거부함은 물론 공사 진행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갑 제10호증 '내용증명' 참조).

- (12) 결국 위 내용증명에서 제시된 2019. 7. 20.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은 그 다음날부터 해제되었고, 이후 원고들은 2019. 8.경 코인노래방 영업을 위한 건물의 임대차계약마저도 해지하였습니다.

3. 피고들의 가맹계약금 반환 의무

피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코인노래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 내에 인테리어공사의 완공은 물론 노래방기기 등의 각종 설비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14개월이 넘도록 그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았고, 결국 이런 이유로 원고들의 계약 해제 통지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9. 7. 21.자로 해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법인에 지급한 9,000만원을 당연히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

가.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 제36조 제1항에는 ‘본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

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이 이행될 것을 전제로 지출하였으나 피고들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발생한 아래의 손해에 대해서 마땅히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원고들이 지출한 임료 합계 22,137,500원

원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코인노래방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2018. 6. 4. 인천시 중구 J 소재 건물 중 2층 전체를 원고 A의 명의로 임대보증금 2,000만원, 임료 175만원(부가세별도), 임대기간 2018. 6. 4.부터 2020. 6. 3.까지 2년으로 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갑 제4호증 '부동산 월세계약서' 참조), 2018. 8.4.경부터 매월 부가세 포함 1,925,000의 임료를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된 2019. 7.까지 합계 22,137,500원⁵⁾을 지급하였는바(갑 제11호증의 1내지 14 '각 세금계산서' 참조),

위 금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으로, 피고들이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임료 합계 25,987,500원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피고 C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원고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공사 독촉을 받자,

- 4) 위 건물의 임대인은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인허가의 문제로 준공이 상당히 지체된 것에 대한 대가로 2018. 6.과 7. 2개월분의 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 5) 다만, 2019. 7.의 임대료는 기한이 1달이 되지 않은 관계로 부가세 포함 962,500원 만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11개월의 임료 합계 21,175,000원(=1,925,000원×11개월) 및 2019. 7. 임대료 962,500원, 합계 22,137,500원(=21,175,000원+962,500원)을 임료로 지급하였습니다.

2018. 7. 27. 원고들에게 '7. 25. 이후부터 발생하는 원고들의 임대료와 대출이자에 대해 일체 보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 최고서(갑 제6호증 '계약이행 최고서' 참조)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급한 위 임료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원고들이 지출한 이자 비용 합계 6,982,049원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계약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 A은 2018. 5. 4. K은행으로부터 2,2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한 후, 이로 인해 2019. 8. 5.까지 합계 878,860원의 대출이자를 지급하였고(갑 제12호증의 1 '여신거래내역 조회' 참조),

원고 F 또한 2018. 4. 18. L은행으로부터 1,5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한 후 2019. 8. 25.까지 합계 3,698,019원의 대출이자를, 2018. 5. 8. M은행으로부터 9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한 후 2019. 7. 29.까지 합계 872,478원의 대출이자를, 2018. 6. 14. N카드로부터 6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한 후 2019. 8. 14.까지 합계 741,645원의 대출이자를, 2018. 8. 23. O(주)로부터 1,2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한 후 2019. 8. 23.까지 합계 791,047원의 대출이자를 각 지급하였는바(갑 제12호증의 2내지 5 '각 거래내역서' 참조),

원고들이 지급한 대출이자 합계 6,982,049원(=878,860원+3,698,019원+872,478원+741,645원+791,047원) 또한 이 사건 가맹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이므로, 피고들이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출한 대출이자 합계 6,982,049원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고 C은 2018. 7. 27.자 계약이행 취소서에서 '7. 25. 이후부터 발생하는 원고들의 대출이자에 대해 일체 보상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출한 위 대출이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결어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가맹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합계 119,119,5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제된 그 다음날인 2019. 7. 2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끝.

변경된 청구원인

1. 원고는 사실관계에 관한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2. 변경 신청 사유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가맹계약금 반환 의무

이 사건 소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코인노래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 내에 인테리어공사의 완공은 물론 노래방기기 등의 각종 설비를 완료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14개월이 넘도록 그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았고, 결국 이런 이유로 원고의 계약 해제 통지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9. 7. 20.자로 해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법인에 지급한 9,000만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의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

(1)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 제36조 제1항에는 '본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가맹계약 제34조 제4항에는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이 이행될 것을 전제로 여러 비용들을 지출하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B의 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발생한 아래의 손해에 대해서 마땅히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원고가 지출한 임료 합계 22,137,500원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코인노래방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2018. 6. 4. 인천시 중구 J 소재 건물 중 2층 전체를 원고 명의로 임대보증금 2,000만원, 임료 175만원(부가세별도), 임대기간 2018. 6. 4.부터 2020. 6. 3.까지 2년으로 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갑 제4호증 '상가월세계약서' 참조), 2018. 8.⁶⁾경부터 매월 부가세 포함 1,925,000의 임료를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9. 7.까지 합계 22,137,500원⁷⁾을 지급하였는바(갑 제11호증의 1내지 14 '각 세
금계산서' 참조),

위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으로, 피고
주식회사 B가 채무를 불이행함은 물론 대표자(C)의 중요한 일신상의 사유(행방불
명)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가 지급한
위 임료 합계 25,987,500원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피고 C의 합의 약정금 지급 의무

(1) 앞서 이 사건 소장의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인 대표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수차에 걸쳐 이 사건 가맹계약의 이행을 위한 코
인노래방 설치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는바,
이에 원고는 2018. 11.경 피고 C을 사기 및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경찰서
에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2) 이후 2019. 5. 13. 원고의 형사고소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C이 2019. 5.
31.까지 공사 완료 및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체보상금 및 일부 월세 등 합
계 3,500만원을 지불한다. 원고 A은 위 합의금을 받으면 피고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추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

6) 위 건물의 임대인은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인허가의 문제로 준공이 상당히 지체된 것에 대한 대가로 2018. 6.과
7. 2개월분의 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7) 다만, 2019. 7.의 임대료는 기한이 1달이 되지 않은 관계로 부가세 포함 962,500원 만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11개월의 임료 합계 21,175,000원(=1,925,000원×11개월) 및 2019. 7. 임대료 962,500원, 합계
22,137,500원(=21,175,000원+962,500원)을 임료로 지급하였습니다.

니다(갑 제9호증의 1 '합의 및 고소취소장' 참조).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피고 C에 대한 위 형사사건은 기소중지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갑 제9호증의 2 '불기소이유통지서' 참조).

- (3) 그런데 피고 C은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2019. 5.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 합의금 3,500만원을 지금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C은 2019. 5. 13.자 위 합의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합의금 3,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결어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가맹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합계 금 112,137,500원(=90,000,000원+22,1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제된 그 다음날인 2019.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2019. 5. 13.자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35,000,000원 및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9. 5. 31.의 그 다음날인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 끝.